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제221261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남근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

다. 회 부 일 : 2025.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 별표 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재 원	◦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또는 아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107조의3제4항2)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용 도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관 리	공정거래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④ 제89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은 반드시 동의의결 이행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개정안”이라 함)에 따르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권익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동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8조³⁾, 제38조⁴⁾, 제43조⁵⁾, 제50조⁶⁾, 제5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범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대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채무상대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조7)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는 경우

-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에도 개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 이면서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공정거래 법개정안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피해상품·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⁸⁾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

8)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

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경우, 해당 과징금들은 단순한 행정벌이 아니라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거래질서 회복을 촉진하는 행정상 금전제재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일부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구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피해구제 기금 재원 관련 과징금 내용 검토>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법률	과징금의 부과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제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제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제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불이익 제공 등 제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불법 다단계, 허위·기만적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전자상거래상의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소비자피해 방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과장·비방광고 등 불공정 표시광고 행위 제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허위·기만적 계약, 부당한 할부거래 행위 제재

또한,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하도급, 가맹, 대리점, 소비자거래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해구제 및 예방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정책 목적의 일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기금의 재원 중 ‘동의의결⁹⁾ 이행사업자의 출연금’의 경우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은 시정방안의 이행이나 피해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¹⁰⁾ 그 이행을 위한 금전 출연 근거는 명확히 규정되

9)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어 있지 않고 있는데,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동의의결제도에 따라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사업자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 사업자에 대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는 가맹·유통·대리점·방문판매·표시광고·하도급 등 6개 개별법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의 자율시정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 비용을 기금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시정과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재원-목적간 연관성이 있어 보임.

-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동의를결 이행 사업자에 대한 출연 규정 법률 조문 검토>

동의를결 출연금 관련 법률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가맹본부가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유통업체가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방문·다단계판매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허위·과장·비방광고 등 위반행위 조사 중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동의의결로 의결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원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다만, 과징금의 경우 사건별 징수액 편차가 크고, 소송에 따른 환급 가능성 등 변동성이 높아 안정적인 수입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동의의결 이행 사업자의 출연금도 개별 사건의 성격과 규모, 기업의 자발적 이행 의지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크고 정기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기금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수납 현황(2020년~2024년)>

(단위: 명,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 징 금	부과건수	110	128	112	118	124
	부과액	3,804	10,084	8,224	3,916	4,227
	징수결정액*	5,772	13,140	12,031	8,376	7,352
	수납액(결산)**	2,632	7,859	6,699	5,521	1,696

* 전년도까지의 미수납이월액 + 당해년도 신규 부과액 - 당해년도 환급액 및 감액

** 당해년도 수납액(전년도까지의 미수납액 중 수납액 포함) - 당해년도 환급액 및 감액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부당한 계약해지, 강제구매 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사업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허위·과장광고, 위해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¹¹⁾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재원인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에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특별하게 과징금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 규정>

법률명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원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법행위로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편,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